



제438회국회(임시회)
제 2 차 국 방 위 원 회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상이등급 심의 신청에 관한 특례 신설〉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791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공 춘 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종득의원 등 16인
2. 발의연월일 : 2026. 5. 4.
3. 회부연월일 : 2026. 5.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이 장해가 되어 퇴직하였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된 경우 그 상이등급의 결정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이등급 결정 또는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었거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이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시적으로 상이등급 결정 또는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었거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이 국방부장관에게 상이등급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둬으로써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상이등급 심의 신청에 관한 특례 신설

개정안은 상이등급의 결정 또는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으로서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상이등급의 심의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방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등급 여부를 결정하면, 상이등급에 따른 상이연금을 해당 군인에게 지급토록 하고,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 3 신설 및 부칙 제2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7조의3(상이등급 심의 신청에 관한 특례) ① 상이등급의 결정 또는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상이등급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심의 신청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등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대상자의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방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상이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상이등급이 인정된 것으로 보고, 상이등급에 따른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이등급 심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가 되어 퇴직한 군인이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가 된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상이연금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제2호의 장해급여 중 가목에 명시된 급여로서,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되어 퇴직하였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된 경우 지급되는 급여임.

상이연금의 지급금액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에 상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상이등급은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이연금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에게 지급되는 핵심적인 재해보상 급여라고 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2024. 2. 28. 선고 2020헌바 320 전원재판부 결정)는 상이연금에 대하여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하는 경우 그 재해에 대한 보상 및 사회보장으로서의 기본적인 급여라고 판시함으로써, 상이연금이 단순한 위로금이 아니라 노동력 상실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보장, 즉 소득보전 또는 소득대체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있음.

이러한 상이연금의 성격을 고려하면, 상이등급 결정 또는 퇴직 과정에서 행정상 오류나 중대한 누락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상이연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순한 절차상 흠결을 넘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의 생활보장 및 보상에 큰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음.

그런데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은 상이등급 결정 또는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었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이를 사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별도의 특례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특히 국가기관의 행정착오, 의무조사 또는 퇴직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누락 등으로 상이등급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상이연금 청구 기회가 사실상 박탈된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일반적인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상이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육군에서 복무하였던 부사관이 GOP 근무 중 고압선 감전 사고로 양팔을 절단하였음에도, 의무조사 및 퇴직처리 관련 서류상 오류 등으로 상이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 군인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복무하고 있으므로, 복무 중 공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적절한 보상과 권리구제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특히 본인의 귀책 없이 행정상 오류 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상이연금 청구 기회가 사실상 박탈된 경우까지 일반적인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구제하지 않는 것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 보호 측면에서 보완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상이등급 결정 또는 퇴직 과정에서의 중요한 사항 누락이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상이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군인에게 사후적 심의 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군 복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는 특례 대상, 신청기한 등을 중심으로 자구 및 개정방식 등에 대하여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특례 대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특례 대상을 “상이등급의 결정 또는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으로 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규정은 퇴직 당시 행정처리나 상이등급 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로 상이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못한 군인을 폭넓게 구제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다만, “중요한 사항” 또는 “중대한 하자”의 의미가 다소 포괄적이

므로, 단순히 상이등급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나 기존 상이등급 재심사와 유사한 신청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특례제도의 취지가 국가의 명백한 과오로 상이연금을 청구하지 못한 사람을 구제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상이등급 결정 전반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인지가 불명확해질 수 있음.

이에 특례 대상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가의 명백한 과오, 행정착오, 의무조사 또는 퇴직처리 과정의 중대한 누락 등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개정안과 같이 보다 넓은 범위의 하자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심의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상이등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는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 원안에는 제27조의3에 따른 특례 심의사항을 제5조에 명시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제27조의3에 따른 심의가 기존 상이연금 등급 결정과 다른 별도의 특례적 성격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면, 군인재해보상심의회가

심의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 특례 관련 사항을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신청기한 규정 방식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제27조의3제2항에서 상이등급 심의 신청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하고 있음.

한시적 신청기한을 두는 방식은 기존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행정상 부담 완화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 특히 법 시행 전 장기간 경과한 사안까지 무제한적으로 심의신청을 허용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다만, 본칙에 특정한 기한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경우, 향후 법 시행 후 새롭게 발생하는 행정착오 또는 중대한 누락 사례에도 같은 기한이 적용되어 2029년 이후에는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기한 도래 이후 추가 구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반복적인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본칙에 고정된 신청기한을 둘 것인지,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칙에서 일정한 청구기간을 두고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사안은 본칙상 일반 특례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퇴직 전 의무조사를 받은 군인 중 행정착오 등 국가의 명백한 과오로 당연히 기재되어야 할 상이등급이 미기재되어, 상이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정하여 법 시행 전 발생사항에 대해서는 청구기한에 5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법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한 제한 없이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되, 법적안정성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법 시행일 이후 최초 발생하는 급여부터 상이등급 심의 청구 특례에 의한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수정동의한다는 입장임.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국가의 명백한 과오에 따른 상이연금 미지급 사항에 한정하여 군 병원에서 접수·확인 후 군인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심의·결정하고 법 시행 전 발생사항은 청구기한에 5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법 시행 후 발생 사항은 청구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며, 상이등급의 결정에 기한의 제한(120일)을 두지 않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음.¹⁾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이등급 결정 등의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경우에 상이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적절한 특례대상의 범위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신청기한 등이 함께 규정될 수 있도록 심사할 필요가 있음.

1) 참고자료 1. 국방부 수정의견 참조.

문 의 처
02)6788-5304

※ 참고자료

1. 국방부 수정의견

가. 안 제5조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5조(군인재해보상심의회) ① ----- ----- 1. ----- ----- <u><신설></u>	제5조(군인재해보상심의회) ① ----- ----- 1. ----- ----- <u>자. 제27조의3에 따른 퇴직 전 의무조사를 받은 군인 중 국가의 명백한 과오로 기재되어야 할 상이등급이 미기재되어, 상이연금을 청구하지 못한 상태로 퇴직하여 상이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군인의 해당 여부</u>

나. 안 제27조의3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u><신설></u>	제27조의3(상이등급 심의 신청에 관한 특례) ① <u>상이등급의 결정 또는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상이등급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심의 신청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u> ③ <u>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등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대상자의 장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u>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방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상이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상이등급이 인정된 것으로 보고, 상이등급에 따른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	--

다. 부칙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1조(시행일) 이 법은 <u>2027년 1월 1일부터</u> 시행한다. 제2조(상이등급 심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가 되어 퇴직한 군인이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가 된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u><단서 신설></u> <u><신설></u>	제1조(시행일) 이 법은 <u>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u> 시행한다. 제2조(상이등급 심의 청구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가 되어 퇴직한 군인이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가 된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u>이 경우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연금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 발생하는 급여부터 지급한다.</u> 제3조(상이등급 심의 청구 특례 경과조치에 대한 시효)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49조에도 불구하고 <u>이 법 시행 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u>

2. 상이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

○ 최근 5년간 상이연금 지급액 및 지급자 수 (군인연금기금에서 지급)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수급액	21,197	22,091	22,942	23,210	23,613
수급자수	1,149	1,148	1,150	1,152	1,157

○ 상이등급별 상이연금 지급기준

상이등급	지급액
제1급	•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52.00%
제2급	•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48.75%
제3급	•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45.50%
제4급	•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42.25%
제5급	•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39.00%
제6급	•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35.75%
제7급	•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32.50%

* 기준소득월액 :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복무하고 얻은 소득 중 과세소득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

○ 상이연금 지급 절차

- 상이연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상이연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소속부대장)에게 제출
- 상이연금 청구서를 받은 참모총장(소속부대장)은 급여사유의 발생에 관한 사항(경위, 사실관계 등) 및 신분에 대한 사항을 조사·확인 후 장해 경위 조사서를 국군재정관리단에 제출
- 국군재정관리단은 청구인 기본정보, 필수서류 누락여부, 청구자격, 급여의 제한사유 등을 확인하고 누락서류를 보완하여 국방부에 보고
 - 이와 함께 군병원에 신체검사 의뢰 병행(신체검사 결과는 군병원에서 국방부로 직접 보고)
- 국방부에서는 군인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상이연금 지급여부 결정, 청구인 통보
-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상이연금 지급

○ 상이연금의 성격

- 상이연금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하는 경우 이러한 재해에 대한 보상 및 사회보장으로서의 기본적인 급여로, 단순한 위로금이 아닌 노동력 상실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보장(소득보전 또는 소득대체)의 성격을 가짐.
- 관련 판례 : 상이연금은 노동력 상실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보장의 성격임.
 - 헌재 2024.2.28.선고 2020헌바320 전원재판부 결정
(구 군인연금법 제3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요지]

장애보상금은 상이연금에 비하여 근로재해에 대한 재해보상으로서의 성격이 약하고 일시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당장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금전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하는 경우 이러한 재해에 대한 보상 및 사회보장으로서의 기본적인 급여는 상이연금이고, 장애보상금은 질병 또는 부상이 공무상의 것인지를 묻지 않고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 (이하 생략)

○ 상이연금 관련 「군인 재해보상법」 주요 내용

제26조(상이연금)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가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2.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가 된 경우

제27조(상이연금의 금액) ① 상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급: 52퍼센트
2. 제2급: 48.75퍼센트
3. 제3급: 45.5퍼센트
4. 제4급: 42.25퍼센트
5. 제5급: 39퍼센트
6. 제6급: 35.75퍼센트
7. 제7급: 32.5퍼센트

② 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이연금 관련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주요 내용

제30조(상이연금의 청구) 법 제26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연금 청구서를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그 소속했던 부대의 장(연대 및 이에 준하는 단위부대급 이상의 지휘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장해 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상이연금등급의 결정)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이연금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의 구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별표 3에 규정되지 않은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에 정해진 장해에 준하여 그 상이등급을 정한다.
- ③ 법 제29조에 따라 제2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상이등급을 정한 후 그 상이등급에 따라 별표 4에 따라 종합상이등급을 결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이등급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